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1

(2015. 5. 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과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 구성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하고
  -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마련(안 제4조)
- 라.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7조)
- 마. 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과 설명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보존
  -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가능 하도록 명시

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함(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당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포구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으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내용을 안 제7조에는 간사와 서기의 내용을 명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와 관련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동(同)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또한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3명)인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명확  
하게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민간전문  
가와 대학교수로 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였으며, 투자심  
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였  
으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서기는 예산  
팀장이 맡도록 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법」 제32조  
의3제2항부터 제5항(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까지  
규정을 적용하였고, 또한 상위법에 따라 동(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특히 예  
산심의, 결산 및 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및 지방장기재정계획 심의 시  
필요한 해당분야 전문가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선정  
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동(同)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 됨.

# 관 계 법 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